
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9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조계원 · 서영교
이병진 · 허 영 · 박균택
김영환 · 김주영 · 장철민
김병주 · 이원택 · 민병덕
박 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하천의 정비·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·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, 친수구역의 지정·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의 분할·합병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,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현행법은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

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위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, 친수구역 조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친수구역 지정의 해제)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<u>3년</u>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 < <u>단서 신설</u> >	제11조(친수구역 지정의 해제) ①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u> 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략)	